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46
----------	-----

2021. 6. 23.(수)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6월 9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정 의원)

### 가. 제안이유

- 관계 법령에 따라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통주와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함(안 제1조, 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홍보 판매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의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현황 : 103개업체 133개면허

- 종류별(133개) : 탁주 45 / 약주 15 / 과실주 46 / 증류식소주 7 / 일반증류주 4 / 기타 16
- 지역별(103개) : 청주 11 / 충주 13 / 제천 5 / 보은 4 / 옥천 7 / 영동 42 / 증평 1  
진천 3 / 괴산 4 / 음성 6 / 단양 7

####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술” 정의를 개정함  
- 「주세법」 전부개정사항 반영하여 “술”의 정의를 개정함
- 안 제6조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 신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전통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수행하려면,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므로,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기타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미비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로, “품위있는”을 “품위 있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 중 “제조업자”를 “전통주 제조업자”로 한다.

제5조 중 “품위있는”을 “품위 있는”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홍보 및 판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u> 지역</p> <p>전통주 산업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u>품위있는</u>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충청북도</u>-----</p> <p>----- -----<u>품위 있는</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술”이란 「<u>주세법</u>」 제3조제1호에 따른 <u>알코올분(分) 1도 이상</u>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u>약사법</u>」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u>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u>)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술”이란 「<u>주세법</u>」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u>제조업자</u>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u>전통주 제조업자</u>----- ----- ----- -----.</p>



## 관련법령 발췌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 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는 전통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비용
- 충북 전통주 홍보 판매관 운영 비용
-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비용

## 3. 관련조문

- 안 제6조(사업지원)제1항 제1호~제4호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홍보 및 판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비용은 지속발생 예상)

-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 3개소(86.4백만원/년) \*개소당 28.8백만원
- 충북 전통주 홍보 판매관 운영 : 20백만원/년
- 찾아가는 양조장 : 1개소(60백만원/년)

나. 추계 결과 : 832백만원(국비 120, 도비 205.12 시군비 360.48 자부담 146.4)

-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 : 28.8백만원×3개소×5년
- 충북 전통주 홍보 판매관 운영 : 20백만원×5년
- 찾아가는 양조장 : 60백만원×1개소×5년

다. 재원조달방안

-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 : 도비 16%, 시군비 64%, 자부담 20%
- 충북 전통주 홍보 판매관 운영 : 도비 100%
- 찾아가는 양조장 :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2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기 확보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 출	1,058,400	226,400	166,400	166,400	166,400	166,400	166,400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518,400	86,400	86,400	86,400	86,400	86,400	86,400
충북 전통주 홍보 판매관 운영	1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찾아가는 양조장	420,000	12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